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3월 2일 나득수 의원 등 22인

나. 회부일자 : 2011년 3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3. 9) 상정
-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3. 9) 수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나 득 수 의원)

제안이유

-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개인·법인·단체 중 표창자를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성실납세”, “모범납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성실납세자” 중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 다. “성실납세자” 중 모범납세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에게는 표창장을, 법인·단체에는 표창장과 현판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수장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7조).
- 바. 표창을 받은 자의 기록보존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 속기록 참고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7조(지원) 2호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가 자칫 시의 행사에 당연한 참여로 생각될 수 있으니 참여를 참관으로 용어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p>	<p>○ 모범납세자 지원에 있어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에서 참여의 용어는 시 행사 시 초청 등의 성격으로 자구 수정에 동의함.</p>
<p>○ 국세청훈령 제1867호(2010.7.19) 성실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하면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수상</p>	<p>○ 조례안 제7조(지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수상한 개인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동조 3호에 표창일로부터 3년</p>

<p>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상(표창)일부터 3년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 표창 수상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상일부터 3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나,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표창 수상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상일부터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있는 바, 본 조례안 제7조(지원) 3호에 의하면 표창 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하는 안으로 이는 어떤 기준에 근거하는지?</p>	<p>간 세무조사 면제를 하는 안은, 국세청 훈령도 참고했으며, 특히 현재 부천시가 운영중인 부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3조(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제1항에 의거 면제 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라는 규정을 참고하였음.</p>
---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21
의결 연월일	2011. 3. 9

제안년월일 : 2011년 3월 9일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있어, 시의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사항 중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 부여”로 수정함.(안 제7조 제 2호)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2호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 부여”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지원) (생략)</p> <p>1. (생략)</p> <p>2.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u>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u></p> <p>3. ~ 6. (생략)</p>	<p>제7조(지원) (제정안과 같음)</p> <p>1. (제정안과 같음)</p> <p>2.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u>등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 부여</u></p> <p>3. ~ 6. (제정안과 같음)</p>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기준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모범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기타 지방세 분야에 공적이 있는 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성실납세자 중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법인·단체로 한다.

1. 20세 이상인 부천시민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2. 사업장이 부천시 내에 소재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이나 단체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

속하여 납부건수가 매년 3건 이상씩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3. 기타 부천시 세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 법인 · 단체

제4조(추천)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중 일정 인원을 모범납세자로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모범 납세자 선정절차) ① 모범납세자 선정은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모범납세자를 심사하기에 앞서 선정기준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모범납세자의 시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표창 등)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에게는 표창장을, 법인 · 단체에게는 표창장과 현판을 수여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수상한 개인 및 법인 ·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자 홍보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4. 표창일로부터 3년 이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 5. 표창일로부터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 면제
- 6. 자금지원 등 기업지원 시 우대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수상자를 개인·법인·단체로 구분하여 인적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